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69988
원 고	000
피 고	000
소 제기일	2006. 5. 11.
판결 선고일	2007. 10. 2.
쟁 점	고객이 만 21세 이상 운전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렌트하였음에도 그 차량을 위 연령 미만의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상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input type="checkbox"/> 원고 승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고 패소 <input type="checkbox"/>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 판시 요지

고객이 계약을 어기고 종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제3자에게 렌트카를 빌려주어 사고가 난 결과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단체할증이 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사고가 날 경우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만큼 보험회사의 렌트카 회사에 대한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이상 고객은 보험료 인상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운전자가 만 21세 이상일 경우에만 자동차종합보험이 되는 차

량을 원고로부터 렌트.

나. 피고는 만 19세인 동생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고, 피고의 동생이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서 상해를 입은 탑승자들에게 61,956,990원의 책임보험금 지급.

다. 원고는 총 발생 사고의 손해액에 따라 원고 소유의 렌트카 전부에 관한 보험료의 할인·할중율을 평가하는 단체할인·할중평가 방식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사고가 없었다면 단체할인·할중율은 85%를 적용받게 되나, 위 사고로 단체할인·할중율이 95%를 적용받아 85%를 적용받을 경우보다 3년간 보험료로 104,013,990원이 인상됨.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연령 미달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동생에게 차량을 전대한 결과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료가 증가하였으므로, 증가된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쟁점

만 21세 이상 운전 한정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트카를 위 연령 미만의 제3자에게 빌려준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위 제3자가 사고를 내어 책임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보험료가 인상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정수보험료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상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보험료의 할중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료 산정시 손해액으로 평가된다고 보임),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의 동생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전

대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것과 보험료 인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소유의 렌트카 206대 전부에 관한 보험료의 할증은 사고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단체할인·할증평가 자동차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있어 피고의 계약위반에 기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206대에 보험료가 단체로 할증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지급된 책임보험금 정도로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만큼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렌트카로 인한 손해액 365,420,270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됨)에 있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보험료 인상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판결의 의미

렌트카 고객이 계약을 어기고 종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어 사고가 난 사안에서 사고로 인상된 보험료에 대한 고객의 책임범위를 명시함.